

구 분	현행(수준) → 조정(수준)	조정율	조정후 지방비교		비 고
			단가(원)	서/지(%)	
가 정 용	110( 42%) → 158원( 60%)	43.8	175	90.5	가정용, 공공수도
영 업 용 1 종	258( 98%) → 338원(128%)	31.2	338	100	병원, 약국, 미장원
영 업 용 2 종	542(205%) → 592원(224%)	9.3	630	93.8	음식점, 여관, 빌딩
육 탕 용 1 종	161( 16%) → 239원( 91%)	48.1	318	75.1	대중목욕탕
육 탕 용 2 종	852(323%) → 852원(323%)	0.0	819	104.1	사우나탕, 터키탕
공 공 용	205( 77%) → 294원(111%)	43.4	326	90.2	공공기관, 학교

○요금수준이 낮은 가정용 등은 상향조정, 높은 업종은 소폭조정으로 업종간 격차를 년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으나, 욕탕용 2종 요금인상이 요청됨.

유인물 73페이지는 급수요율대비표를 현행과 개정한 것과 비교해서 보고올렸습니다.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. 이 사항은 수도물의 총괄원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, 그 설명을 여기에 올려 놓았습니다. 급수수입을 기준으로 볼 적에 92년에는 m<sup>3</sup>당 185원 81전이 되었고, 92년 9월 23일 수도요금 5% 개정으로 m<sup>3</sup>당 194원 33전이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요금은 필수적으로 얼마를 올려야 되겠느냐, 41.94%가 나왔습니다.

다음 유인물 76페이지를 지방요금과 비교표를 보고 올렸습니다.

유인물 79페이지는 업종별로 조정하는 요금표를 보고해 올렸습니다.

다음은 81페이지 시설부담금인상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.

시설부담금 인상 분석

(가) 현행 급수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급수조례

제11조(시설부담금)① 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(급구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)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부담금을 제8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

(개정 81. 8. 10 조례 1528).

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양수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부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. 이때 호별 산정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.

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되고 있고, 현재 징수하는 그 사항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인물 81페이지 보면 현재에 받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금액이 즉 보고되어 있습니다.

시설부담금액표

(별표 1) (개정 91. 1. 15 조례 2705)

구 분	시설부담금액	
	신 설	개 조
내경 13%㎍	86,000원	개조시에는 신·구
내경 20%㎍	279,000원	구경별 시설부담금의
내경 25%㎍	496,000원	차액을 징수한다.
내경 40%㎍	1,520,000원	
내경 50%㎍	2,420,000원	
내경 75%㎍	5,010,000원	
내경 100%㎍	8,560,000원	
내경 150%㎍	18,640,000원	
내경 200%㎍	26,500,000원	
내경 250%㎍	35,700,000원	
내경 300%㎍	44,600,000원	
내경 350%㎍	56,000,000원	
내경 400%㎍	61,000,000원	

\*내경구분은 양수기 구경을 기준으로 한다.

(나) 부담금수준은 수전당 소요액의 33% 수준(20%이상은 40%수준)으로 상수도 사업 결손은 67%인바 인상요인은

200% 수준임. 따라서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  
 -분담금(구경 13mm의 경우)을 분석하면  
 수전당소요액 258,000원  
 현행분담금 86,000원  
 비율 33% 수준  
 결손액 172,000원(67%)  
 인상요인 200%으로 나타나며,  
 -분담금실상을 검토하면  
 1,100만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현대화 소요예산은 년 21·2,300억 소요되나 '82부터 '93년 기간 '91년 29.3% 1회 인상이되었으나, 타도시보다 월등히 낮아 인상이 요청되고 있음.

(단위:천원)

구경	서울	지방					
		평균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
13mm	86	180	216	225	180	100	180
20mm	279	487	584	600	490	490	270
50mm	2,420	4,236	5,060	5,265	4,300	4,254	2,300

-인상개정안은 서울과 지방요율의 중간수준으로 조정

구분	조정내역		조정율 (%)	지방비교	
	현행	→ 조정		금액	서/지(%)
13mm	86	→ 132천원	53.5	180천원	73.3
20mm	279	→ 383천원	37.2	487천원	78.6
50mm	2,420	→ 3,330천원	37.6	4,236천원	78.6

하였으며, 소요비용수준 근접방향으로 인상이 요청되나 평균분담금 원가수준인 40%로 인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지방평균부담율 48%
- 서울평균부담율 36%
- 1개 수전당 시설부담금은 360,205원이 소요되어, 현행요금의 200% 인상이 요청되나 지방요금의 중간수준인 40% 적용은 수전평균 원가수준 40%와 적정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유인물 85페이지입니다. 시설분담금에 관한

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올렸습니다. 유인물 86페이지입니다. 현행 시설분담금이 원가에 어느 수준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죽 보고를 올렸습니다. 예를 들어서 13mm로 구경일 경우에는 약 258원 그 다음에 20mm일 경우에는 696원이 되는데 현재의 경우 279원을 받아가지고 13mm로 보자면 요금인상요인이 33.3%이나 20mm이하의 40.1% 인상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맨 밑에 86페이지 현행분담금 원가비율 크로바표시, 거기에 40% 수준까지는 올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올렸습니다.

그 다음에 87페이지는 부과대상 수전의 숫자가 맨 우측에 총 수자원 168만 2,912개지만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165만 5,803개에 대한 설명입니다.

다음은 유인물 94페이지 급수관손료 인상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.

(나) 급수관 손료 조정

(1) 급수관 손료

배·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감가상각비로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 부과하며, 노후관 개량 및 판기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사용

(2) 급수관 손료 수준(구경 13mm의 경우)

- 수전당소요액 : 월 1,983원
- 현행 손료 : 210원(10.6% 수준)
- 결손액 : 1,773원(인상요인 844%)

※급수관 손료 '93예산=1,005억

- 노후관개량 970억
- 수도계량기교체 35억

(3) 구경별 소요액 산출내역

급수관 손료 산출내역

○산출방법

- 급수관손료=수도계량기 손료+배·급수관 손료
- 수도계량기 손료=전당 취득가액÷내구년수÷12월
- 배·급수관 손료=(총취득가액×구경별적수)÷(총적수×구